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문 화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손 자 용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10월 1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0월 1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국회·정당,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서울사무소 사업소 신설에 따른 정원증원 사항을 반영하고,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사무기능직 공무원이 경력경쟁임용 시험을 통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정원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 2,924명 → 2,928명(+4)
- 직종별 정원 조정
 - 일반 직 : 1,077명 → 1,099명(+22)
 - 일반직 4급 : 58명 → 59명(+1)
 - 일반직 5급이하 : 1,009명 → 1,030명(+21)
 - 기능 직 : 239명 → 221명(△18)

4. 검토의견

금번 개정조례안은 국회·정당,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서울사무소 사업소 신설에 따른 정원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의 전환을 위하여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 서울사무소 사업소 신설에 따라 4급 1명, 5급이하 3명 등 4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2,924명에서 2,928명으로 증원하고,
- 일반직 정원을 증원된 4명과 사무분야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될 정원 18명을 포함하여 1,077명에서 1,099명으로 증원하며, 이에 따라 기능직 정원을 239명에서 221명으로 18명 감원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서울사무소 사업소 신설에 따른 증원과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을 일반직 공무원 정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붙임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